

【 8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6.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기구 개편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등 기구를 개편하여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둠. (안 제3조)

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둠. (안 제4조)

다. 총무국에 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둠.
(안 제5조)

-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중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과 전산 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를 둠. (안 제6조)

-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중 “산림에 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를 둠. (안 제7조)

-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중 “산림에 관한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다른 조례 개정 (11개 조례)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삭제한다.

제4조중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치정보과”를 “공보전산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9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9.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10. 전산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취업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 위스타트,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관광, 관광지,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체육단체지원, 공공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 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자·외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12. 농정,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13. 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및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에 관한 사항
5. 도로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점상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8. 산림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통·운수에 관한 사항
11.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2.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13. 광고물에 관한 사항
14.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자치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③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행정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양주시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⑦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자치정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부시장)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u>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u></p>	<p>제3조(부시장) ① ----- ----- <u>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u></p>
<p>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u> 을 둔다.</p>	<p>제4조(국의 설치) ----- 분장 -----, <u>주민생활지원국,</u> ----- -----.</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u>총무과, 자치정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u>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u>공보전산과,</u> ----- -----. ② ----- 다음의 사무를 -----. 1 - 8. (현행과 같음) <u>9.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u> <u>10. 전산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u></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u>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공원녹지과</u>를 둔다. ②<u>사회산업국장은</u>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사회복지·여성·가정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u> 2. <u>공중·식품위생·장사에 관한 사항</u> 3. <u>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4. <u>청소행정, 폐기물시설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u></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u>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농축산과</u>를 둔다. ②<u>주민생활지원국장은</u>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u> 2. <u>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자원봉사,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취업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u> 4. <u>노인복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 위스타트, 장사 등에 관한 사항</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5. <u>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5. <u>공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u>
6. <u>조사지원 및 고용정책,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	6. <u>문화예술, 관광, 관광지,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7. <u>민자, 외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u>	7. <u>체육진흥, 체육단체지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8. <u>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u>	8. <u>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9. <u>농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9. <u>청소행정, 폐기물시설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u>
10. <u>산림에 관한 사항</u>	10. <u>지역경제, 유통지원, 상공업,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11. <u>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	11. <u>민자, 외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u>
〈 <u>신 설</u> 〉	12. <u>농정,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u>
〈 <u>신 설</u> 〉	13. <u>농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u>
제6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략) 6. <u>노점상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u>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u>노점상에 관한 사항</u>
7. (생략) 8. <u>교통·운수에 관한 사항</u> 9. <u>주택, 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 10. <u>재난·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u> 11. <u>민방위·공익근무 요원에 관한 사항</u>	7. (현행과 같음) 8. <u>산림에 관한 사항</u> 9. <u>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 10. <u>교통·운수에 관한 사항</u> 11. <u>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12.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p> <p><u>제7조~제18조 (생략)</u></p>	<p><u>12.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u> <u>13. 광고물에 관한 사항</u> <u>14. 재난·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u> <u>15. 민방위·공익근무 요원에 관한 사항</u></p> <p><u>제8조~제19조 (현행과 같음)</u></p>